

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(제118조제2호 관련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위반횟수별 처분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1. 해당 방송통신기자재 등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	법 제58조 의4제1항제 1호	시정명령 및 생산·수입·판매 또는 사용중지 (1개월)	시정명령 및 생산·수입·판매 또는 사용중지 (2개월)	취소
2.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8조 의4제1항제 2호	시정명령	생산·수입·판매 또는 사용중지 (1개월)	생산·수입·판매 또는 사용중지 (2개월)
3.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	법 제58조 의4제1항제 2호	취소		
4.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.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. 가목 외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8조 의4제1항제 3호	시정명령	생산·수입·판매 또는 사용중지 (2개월)	취소
5. 법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	법 제58조 의4제1항제 4호	시정명령	생산·수입·판매 또는 사용중지	생산·수입·판매 또는 사용중지 (4개월)

6. 법 제5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 의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가.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나. 가목 외의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	법 제58조의4제1항제5호	시정명령	(2개월) 생산·수입·판매 또는 사용중지 (2개월)	취소
7. 법 제58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허위로 지정한 경우	법 제58조의4제1항제6호	취소		
8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	법 제58조의4제2항제1호	취소		
9. 법 제58조의4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58조의4제2항제2호	취소		

비고: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수거·파기 명령을 하여야 한다.